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측면의 혜택

– 신규 특수건물주를 중심으로 –



윤동혁
(업무부장)

1. 머리말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 등은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재산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재산)들이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날려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무료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그 관리 업무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수행도록 하고 있다(현재 안전점검은 화보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은 일반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동 특별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특수건물의 종류, 보험의 정의 및 특수건물의 보험혜택에 대하여 신규 특수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해를 돋고자 한다.

2. 특수건물이란?

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특별법)

제정일 1973. 2. 6[법률 제2482호]

개정 1988.12.31[법률 제4069호]

개정 1994.12.23[법률 제4831호]

개정 1997. 1.13[법률 제5258호]

– 입법배경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호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의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특별법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 목적 –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나. 특수건물의 종류

이번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과 그 효과”

참조

다. 적용지역

특수건물의 적용지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97. 6. 13.).

3. 보험의 개념

화재보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건물 또는 가재도구가 화재로 소실한다는 일정의 우연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행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금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금 등의 수단으로 대규모 화재에 대비하는 경우는 매년 많은 액수의 예금을 하여야 하며, 또 그 목표액의 적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입자인 많은 경제주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로서 분담하므로 많은 액수의 보험금도 용이하게 지불될 수 있고 또 화재손해가 발생하는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시설이 보험인 것이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험을 정의하면 “보험이란 일정의 우연사실에 대한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로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해서 확률계산에 의해서 공평한 분담을 행하는 경제시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에 따라서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요건이 구비됨을 알 수 있다.

- (1) 특정의 우연적 사건의 발생
- (2) 경제적 안정 대책
- (3)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 (4) 합리적 계산에 의한 각출금
- (5) 책임제의 경제시설

이상의 다섯가지의 보험요건중 단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은 아니라고 본다.

4. 보험의 필요성

가. 생활의 안정

보험의 본질적 가치란 실로 우리들의 경제생활에서 불안을 제거하여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들의 경제생활의 불안을 용이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거한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만일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한 권리로서 그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사업의 안정

이와같이 보험은 개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경제기구에 있어서는 사업경영상 불가결의 시설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활안정을 구함과 동시에 사업도 그의 사업경영의 안정을 구한다.

그리고 공장, 상점, 창고 등의 건물 및 상품, 기계 등에 대한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면 이들의 동산, 부동산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사업가는 화재보험의 보호를 얻어서 비로소 안정된 사업경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사회정책으로서의 보험

보험은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근대국가에서는 필요불가결의 것이 되었다. 건강보험(암보험 등), 후생연금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등 소위 사회보험이라고 호칭되는 보험은 국민일반의 궁핍을 구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사업인 공영 또는 국영의 형태로서 경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은 근대국가가 사회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도가 되어 있다.

5. 의무보험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 제1항(주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토록 의무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행정 조치).

〈주 1〉

전조 제1항(제4조1항)–건물 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 책임)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 2).

〈주 2〉

– 실화책임에관한법률–(특별법)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서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실화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는 무과실이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특수건물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6.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혜택

가. 무과실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과거의 화재사건을 보면 윤성방적, 대왕코너, 대연각호텔 등 대형 및 소형의 수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건물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건물내의 수용인원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도 많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건물 주에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무과실(경과실 포함)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 인명피해시 보상액–〈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1) 사망시 :3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97. 6. 13).

(2)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특별법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

할 수 없다.

(3)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특별법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1급의 경우 최고 3천만원, 14급의 경우 120만원 보상)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97. 6. 13).

(나)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다)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라)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참고]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인원은 무제한

나. 전액보험으로의 유도(보험가입금액의 현실화: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 유도)

통상적으로 보험에서의 전액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액(시가)과 보험가입금액이 1:1의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10억원짜리의 재산(시가)을 10억원 전액을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A)와 10억원짜리의 재산을 5억원만 가입하였고(B), 3억 원의 피해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산출방식은,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시가)}} = \text{지급 보험금}$$

(A)의 경우(전액 보험)

$$3\text{억 원(피해 액)} \times \frac{10\text{억(보험가입금액)}}{10\text{억(보험가액)}} = 3\text{억 원(피해액 전액보상)}$$

(B)의 경우(일부보험)

3억 원(피해액) ×	5억(보험가입금액)	0.5
	10억(보험가입금액)	1
= 1.5억 원(피해액의 50%만 보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특수건물소유주는 보험가입시 시가전액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여야만 이재시 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 풍수재자위험 자동담보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화재사고 이외의 풍수재사고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담보된다(손해보상범위확대).

라. 보험료 경감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킨 특수건물의 「신체특약부화재보험」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사전 안전점검에 의하여 특수건물의 이재율이 낮기 때문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주 1)을 받을 수 있다.

〈주 1〉

업종별 할인율

업 종 별	할 인 율
주택물건	적용요율의 30%
호 텔	적용요율의 10%
학교, 시장(대형점, 대규모매점, 도매센타포함)	적용요율의 15%
공연장	적용요율의 20%
국유건물, 11층 이상인 건물	적용요율의 25%
방송국(촬영소, 텔레비전 촬영소 포함)	적용요율의 30%
학원, 병원	적용요율의 30%
공 장	적용요율의 25%

7. 맷는 말

인간은 모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위험(수많은 위험이 산재되어 있음)으로부터 영원히 탈피할 수는 없다. 위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전 역사의 일부분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석기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위험은 야생동물, 자연 또는 다른 여러 이유에 기인한 식량의 결핍, 재난으로 인한 주거의 상실 혹은 다른 인간 및 인간집단에 의한 공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들에 대한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을 없애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최고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조심을 한다 하여도 영원히 그 위험을 따돌릴 수 없다. 화재로부터의 올바른 재산관리를 위하여는 1차적으로 화재예방 차원의 위험관리를 잘 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생활을 영위하든간에 항상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생각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